

#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박성종<sup>†</sup> · 한경일<sup>††</sup>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legac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Focusing on financial institution -

Sung-Jong Park<sup>†</sup> · Kyung-Il Han<sup>††</sup>

## ABSTRACT

This paper 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the introduction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will have on legacy AIS(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how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at. In order to meet that purpose, we hav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K-GAAP(Korea-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K-IFRS(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irst. And then we try to find out what effects the difference between K-GAAP and K-IFRS will have on the legacy AIS. In order to avoid the disorder When K-IFRS will be introduced to the company, new functions have to be added to existing system in proper manner and some existing functions should be changed correctly according to K-IFRS. And CIO(Chief Informatoin Officer) should have to make a careful decision what is the better solution between in-house development and outsourcing for developing new system.

**Key Words:** IFRS(International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s), Introduction of IFRS, difference between K-GAAP and K-IFRS, Effect of IFRS on AIS

<sup>†</sup>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저자)

<sup>††</sup>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0년 8월 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0년 9월 2일

\* 본 논문은 한경일교수의 안식년 기간 중 연구되었음

## 1. 서론

현대자본시장의 세계화 경향은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왔다. 특히 회계제도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본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왔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 금감위, 금감원, 회계법인등이 참여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의 도입 로드맵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11월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에 이를 공표하였다. 또한 '09년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1].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이 될 때, 기존의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활동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상품과 연결회계처리 그리고 기타 회계처리의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 기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기준의 변화가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해보았다.

## 2.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차이

### 2.1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차이

금융기관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매우 많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관련 기준으로 인한 K-GAAP (Korea-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K-IFRS의 차이는 매우중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서 8호, 9호, 13호,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종합금융업 회계처리 준칙, 해석 53-70 파생상품, 실무의견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K-IFRS에서는 제 1032호 및 1039호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 2.1.1 금융상품의 분류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기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도 포함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 이외에 예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 파생상품은 특별한 분류가 없다.

K-IFRS에서는 유가증권외에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단기매매항목(HFT, Held for

trading)으로 단기간 내에 매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 및 포트폴리오의 일부, 파생상품(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을 포함한다. 둘째 당기손익인식항목(Fair value option)으로 최초 인식시 공정가액 평가하기로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상기 두가지는 통합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셋째 만기보유항목으로(Held to maturity) 만기가 있으며,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 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대여금, 수취채권항목으로(Loans and receivable)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 중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섯째 매도가능항목으로(AFS, Available for sale) 매도가능금융자산지정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외의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2][7][8].

### 2.1.2 금융상품의 후속측정

K-IFRS에서는 상기의 분류 범주에 따라서 후속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K-GAAP에서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등 K-IFRS가 요구하는 후속측정 방식과 원칙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분증권의 경우 K-IFRS에서 연결대상 또는 지분법 대상이 아닌 모든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K-GAAP도 유사하다. 그러나 K-GAAP에서 정의하는 공정가치의 개념등이 K-IFRS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K-IFRS에서는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정의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발행할 부채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GAAP에서는 시장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전일종가등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객관적인 공시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았었다. 특히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에 따라 그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K-IFRS에서는 공정가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5].

### 2.1.3 금융상품의 손상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유의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로 보고 있다. 이 경우 K-GAAP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손상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의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를 지분상품의 손상의 객관적증거로 본다는 것은 처음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원가법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 ①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 ②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
- ③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인 비외국 대상회사
- ④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
- ⑤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
- ⑥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회사 등

도입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차이가 발생한다[2][7][8].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대표적인 자산은 대출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K-GAAP하에서는 대출채권의 손상을 측정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때 각업종별 감독규정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구간별 최소적립율과 과거경험율에 근거한 대손추정치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여 왔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과거경험율을 반영하기보다는 대부분 감독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간별 최소적립율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같은 적립율을 사용하여 손상을 인식해 왔다. 그러나 K-IFRS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국 공유의 감독규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평가시 개별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평가를 수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합적으로 손상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사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의 집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손상평가시 해당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근거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을 통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합평가시 과거 손상차손의 경험을 이용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 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합의 손상차손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식화된 접근방법이나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대여금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2][7][8]

## 2.2 연결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차이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25호 연결 재무제표 및 외감법 시행령등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일반적인 연결법

위의 결정 및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관련된 내용을 K-IFRS 1027호 및 K-IFRS 해석서 2012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2.2.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연결회계처리의 관점에서 K-GAAP과 K-IFRS의 가장 큰차이점은 K-IFRS에서는 개별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된다는 점이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면 분기공시를 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처럼 분기별로 개별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1년에 한번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는 종전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개별재무제표보다 상대작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어 작성되어왔던 연결재무제표는 내부거래의 제거, 미실현손익의 인식등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 2.2.2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의 변동

K-GAAP에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포함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므로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범위의 정의도 K-GAAP보다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자회사의 범위가 변동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특수목적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여부는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K-GAAP에서는 특수목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0-24\*에서 자산유동

화에 관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의견서 2004-7\* 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K-IFRS를 적용할 경우 기존에 연결에서 제외되던 특수목적기업을 새로이 연결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범위 결정 역시 일반적인 회사의 연결범위 판단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기업이 K-IFRS 해석서 2012호에 따라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3][4].

## 2.3 기타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차이

### 2.3.1 유효이자율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산정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회계처리가 많다 이에 대하여 K-IFRS에서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하며 기대만기를 산정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K-GAAP하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대출부대수익의 일부분만을 고려하고 기대만

기가 아닌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한다[2][7][8].

### 2.3.2 투자부동산

K-IFRS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K-GAAP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 종전에는 투자부동산의 구분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었다.

### 2.3.3 자산손상

K-IFRS에서는 매보고일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업권의 경우에는 K-GAAP과 달리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손상검사를 통해서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되어있다[2][7][8].

### 2.3.4 종업원 급여

종업원급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이다. K-IFRS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채무와 비용에 대해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확정급여채무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업원의 예상퇴직시점, 급여인상율, 퇴사율등을 보험수리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 후 급여등을 추정하여 확정급여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K-GAAP하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회계처리 한다[2][7][8].

\* 실무의견서 2000-2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목적기업인 경우, 활동 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수동적 활동으로(예: 자금의 회수) 제한되어 있다면 금융자산의 양도자는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음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함.

† 실무의견서 2004-7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재산 운용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3.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존 회계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3.1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차이가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GAAP과 K-IFRS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의 경우는 새로이 추가 되는 범주이므로 시스템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 금융권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지금까지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한 분류만을 각 금융상품별 시스템 항목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K-IFRS에 따른 새로운 분류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관련시스템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회계기준의 다른 분류도 History관리 차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분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시스템내의 계정체계 즉 COA(Charter of account)이다. 이 경우 COA가 새로운 계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하며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처럼 새로 생기는 계정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규로 COA에 관련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COA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미리 현황파악을 하고 수정하거나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부분을 도표화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금융상품 후속측정에 대한 기준차이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금융기관이 후속측정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받느냐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상장된 지분증권의 경우 증가를 증권전산으로부터 수

신받아 이를 후속측정의 기본값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를 후속측정의 기본값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증가외에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호가를 수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 지분증권의 경우는 대부분 원가법을 적용하여 왔고 공시가 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 원천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 경우 두가지정도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민간평가사에게 비상장 지분증권의 평가값을 의뢰하고 그 결과값만을 수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시장에서 인정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므로 신뢰도 입증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공정가치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히 데이터를 산출할 수는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스템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후 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두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용 효익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적절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 손상과 관련하여 지분증권의 경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유의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지분상품의 종류가 다수이고 이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려면 매일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하여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에 대하여 시스템화를 하지 않고 매뉴얼화하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손상을 평가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그러나 손상평가가 금융기관의

당기손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고 그금액의 중요성이 크다면 또한 히스토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시스템화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익측면에서 월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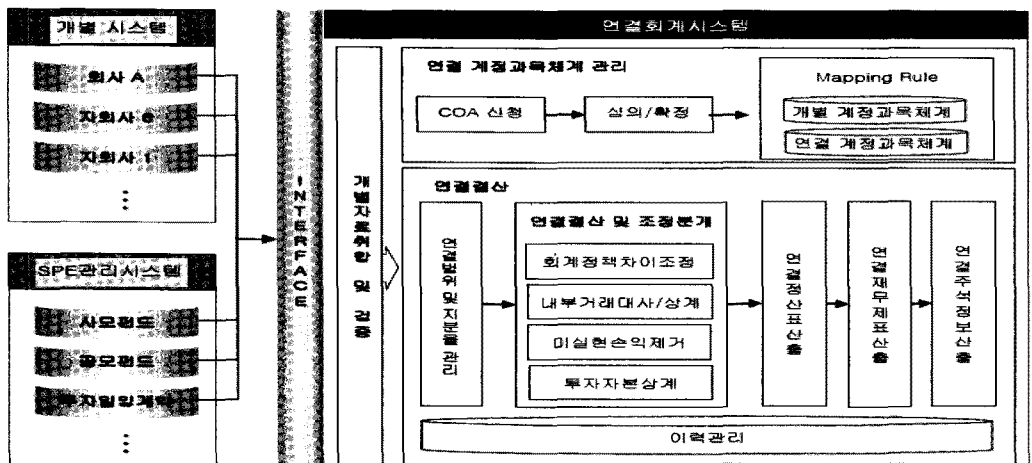
대출채권의 손상의 경우 금융기관 특히 대출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업의 경우는 영향이 제일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외부공시목적으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일괄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별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내부사용목적 및 은행의 경우 자본건정성 확보목적의 바젤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만 대출채권의 부도 및 손실가능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K-IFRS가 도입되면 대출채권의 손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상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대출채권의 개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차주별로 손상평가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담보처분현금흐름이나 영업현금흐름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관리되고 해당 산출액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집합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 경우 은행등 금융기

관에서 내부사용 및 바젤제도 운영을 위하여 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율(LGD)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을 수정하여 K-IFRS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율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K-IFRS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야하며 시스템 구축시의 손상산정 방식은 바젤방식의 기대손실산정 모델\* 이나 다른 합리적인 방식 예를 들어 손실전이를 모형등 해당기업의 상황 및 데이터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3.2 연결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차이가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신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 감독

기관등도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근거 및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회계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수작업을 통하여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하던 회사라면 작성의



<그림 1> 연결회계처리 시스템 개요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연결회계처리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연결회계처리 시스템의 개요를 보면 <그림1>과 같다.

기존에도 일부 대기업 및 자회사가 많은 그룹사의 경우 연결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연결회계처리 자체는 K-GAAP과 K-IFRS간에 큰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의 연결시스템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IFRS적용을 위하여 연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스템을 자체개발할 것인지 아

니면 Package를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체개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필수사용 기능을 위주로 구현할 수 있고 자체개발인력이 회사내에 존재하므로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기간 및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Package도입의 경우 개발기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패키지화된 개발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체개발인력이 회사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지보수에 제한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에 한계

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

한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방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결시스템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K-GAAP하에서 구축된 연결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중 내부거래대사 및 상계, 미실현손익의 제거는 K-IFRS하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의 경우는 K-IFRS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새로이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수목적기업의 경우 일반 자회사와 달리 개별채무제표자료가 대부분 회계처리를 대행하는

사무수탁사등 외부에서 입수하여야 하므로 시스템요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관련 자료를 인터페이스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그러므로 시스템이 연결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회계처리함에 따른 추가적인 기능요건등을 발굴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 기타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차이가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유효이자율법을 K-IFRS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출부대손익을 계좌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출채권부대손익을 계좌별로 처리하는 것이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면 최소한 포트폴리오 단위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대만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취합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이 생기는 개념이므로 유형자산 관련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여 분류 회계처리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히 시스템이 수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손상과 관련해서는 손상테스트를 시스템화하여 손상징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확정급여채무의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사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회사내의 인사시스템에 확정급여채무 산정 모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직원의 급여정보등 중요정보의 외부유출이 없고 현업의

† 기대손실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기대손실(Expected Loss) = 부도시 채권잔액(Exposure At Default) X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X 부도시손실율(Loss Given Default)



의견반영 및 매결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내부산출시 객관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시스템의 구축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외부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스템구축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회사의 특수사항이 보험수리적가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두가지 대안을 결정할 때 해당기업은 확정급여채무가 전체 재무구조에서 차지 하는 비중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정확성 및 변동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이중분개생성의 문제이다. 현행 세법이나 타 국내법규등으로 인하여 한동안은 금융기관이 K-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K-IFRS로 산출된 재무제표를 모두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K-GAAP을 기본분개로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K-IFRS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위한 조정분개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의 부담이 적고 변경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유연성은 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며 향후 K-GAAP 재무제표 산출이 필요없어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K-GAAP, K-IFRS 재무제표를 별도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 대안을 고려할 경우는 두 개의 재무제표를 생성할 경우 기업의 시스템의 기능의 저하정도와 시스템의 개발 규모가 처음에 언급한 대안보다 상당히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감수 할 것인지의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4. 결론

세계화의 경영환경 속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의 최소화를 위하여 회계기준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가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의 차이로써, 분류, 후속측정방법, 손상발생에 대한 근거의 측면이다. 둘째는 연결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의 차이로서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의 차이이다. 유효이자법의 적용, 투자부동산, 자산손상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화된 부분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연결회계처리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각 기업의 처한 환경에 따라 자체개발할 것인지, 상용화된 패키지를 도입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변화된 부분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중요정보의 유출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다면 발생 가능한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성공적인 세계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상장사협의회(2007).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2] 한영회계법인(2008).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 기준 비교해설, (주)영화조세통람
- [3] 금융감독원(2000),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 [4] 금융감독원(200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 [5] 금융감독원(2006),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 [6] 권수영,전영순(2008).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회계제도의 구축 방안, 금융감독원 IBRD 지원보고서
- [7] E&Y. (2006). Observ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FRS
- [8] IAS, (2007).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박성종<sup>†</sup>    한경일<sup>††</sup>

## 한글 요약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금융상품의 기준, 연결회계처리, 기타회계처리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부분의 차이가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도입되면 우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자 기업의 처한 환경에 따라 자체개발 할지 혹은 패키지를 도입할 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국제 회계기준 도입, 국제 회계기준과 국내 회계기준의 차이, 국내 회계기준, 국제 회계기준의 효과

---

<sup>†</sup>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저자)

<sup>††</sup>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박성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 석사  
한국공인회계사  
전) Ernst & Young 한영회  
계법인 금융사업본부 근무  
현재: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회계정보시스템

E-mail : sjpark@anyang.ac.kr



### 한경일

1982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  
과 학사  
1986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  
정보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석사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  
학과 경영정보학전공 박사  
전) 쌍용컴퓨터 수석컨설턴트  
현)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e-learning,  
e-government, 회계정보시스템

E-mail : kihan@anyang.ac.kr